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4
------	-----

2022.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11.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2017년부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간 청년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 나.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투자실적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스타트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소 재 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 3층(더라움펜트하우스)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 3층·8층(건대입구역자이엘라)
시설규모	연면적 3,498㎡
시설용도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집중 육성(Scale Up)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3.1.~2026.2.28.)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 : 2,500백만원('23년 예산안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15조(대행·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육성한 창업기업이 3~7년차에 경험하는 데스밸리(죽음의 구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VC 후속 투자 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가 창업밸리로 도약하는 데에는 캠퍼스타운 대학 간 연계, 다양한 민간기업,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므로 창업기업 보육지원에의 전문성과 민간 창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킹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리시리즈 A단계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발·육성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처방 지원
-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거점 구축
 - 투자자가 육성·투자까지 전과정 참여, 투자기관과 사업모델 검증
 - 데모데이, 전문가·VC 네트워킹 행사 등 정기적 투자 유치기회 제공
- 캠퍼스타운간 네트워킹 및 국내·외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
-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9.2.) 심의 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건대입구역 인근 기부채납 시설에 조성된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 센터(“동북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신규로 제출됨.

나. 캠퍼스타운 조성과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현황

-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과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 등을 통합 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4년간 개소당 80억원)과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3년간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제4기(2022~2025)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창업공간과 창업팀을 육성한 결과, 6천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806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함.

<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분야 주요 성과 >

[창업 공간·팀·일자리]	[매출·투자 발생]
✓ 창업시설 : ('17)24개소 → ('22)95개소 (296%)	✓ 매출액 : ('17) 3.8억원 → ('21) 904억원 (9,031%)
✓ 창업공간 : ('17) 42실 → ('22)715실 (1,602%)	✓ 투자유치 : ('18) 44억원 → ('21) 806억원 (472%)
✓ 창업팀 : ('17) 87팀 → ('22)1,887팀 (2,069%)	✓ 지적재산 : ('17) 18건 → ('21) 1,381건 (7,572%)
✓ 창업일자리 : ('17) 152명 → ('22)6,172명 (3,931%)	

- 그러나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창업기업이 2~7년차에 경험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¹⁾’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게 됨.
- 이에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동북권센터를 조성·운영함.
 - 동북권센터는 건대입구역 특별계획구역(더라움펜트하우스, 건대입구 자이엘라)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630%→800%)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임.
 -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2022. 5.) 이후 민간위탁(2023. 3.) 운영 전까지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공유오피스 멤버십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용역을 시행 중임.

< 동북권센터 현황 >

시 설 명	면적(㎡)	사용층	기업공간		공용공간	개소 시기
			독립	개방		
자양동 2-3 (더라움펜트하우스)	2,576	지상 3층	4개 (45좌석)	84좌석	회의실(7), 사무실(1), 공유키친(1), 폰부스(3), 라운지	'22.9.
자양동 2-2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716	지상 3층	-	51좌석	회의실(2), 공유키친(1), 폰부스(3), 라운지	'23.3. (예정)
	206	지상 8층	-	20좌석	회의실(1)	'23.3. (예정)

1) 죽음의 계곡 :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낸 용어

- 올해 9월에 개관한 더라움펜트하우스(3층)는 독립형(4개)과 개방형(84좌석) 기업공간과 회의실, 사무실, 공유키친 등을 운영 중이며, 건대입구역 자이엘라(3층, 8층)는 개방형 기업공간(20좌석)과 공유키친, 라운지 등을 마련해 내년 3월 개관 예정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북권센터’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역량을 갖춘 민간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관리(시설형) 할 계획임.
 - 동북권센터의 주요 사무는 캠퍼스타운 관련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성장유망기업²⁾의 투자유치 전략거점 구축, 네트워크 및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 인재 양성, 시설관리 및 운영 등임.
 -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은 3팀 9명(센터장 1, 팀장 3, 직원 5)으로 구성되고,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인건비(5억 7천 7백만원), 운영비(4억 5천 7백만원), 사업비(11억 5천만원), 위탁수수료 등(2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2)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또는 투자유치 3억원 이상의 기업

- 창업지원 분야는 창업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의 전문성·효율성·창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캠퍼스타운 출신 성장유망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의 조성³⁾과 스케일업에 초점을 둔 전문 민간 육성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초기단계를 극복한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고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까지 2개 권역에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임³⁾.
- 다만, 시설형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행정재산)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해당 시설과 관련된 세입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⁴⁾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북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된 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3) 홍대입구역(서북권, 2024), 중앙대인근(서남권, 2026)

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④ 생략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⁵⁾에서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이나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성장유망기업”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5)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4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17년부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간 청년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 나.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투자실적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스타트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소재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 3층(더라움펜트하우스)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 3층·8층(건대입구역자이엘라)
시설규모	연면적 3,498㎡
시설용도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집중 육성(Scale Up)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3.1.~2026.2.28.)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 : 2,500백만원('23년 예산안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15조(대행·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육성한 창업기업이 3 ~ 7년차에 경험하는 데스밸리(죽음의 구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VC 후속 투자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가 창업밸리로 도약하는 데에는 캠퍼스타운 대학간 연계, 다양한 민간기업,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므로 창업기업 보육·지원에의 전문성과 민간 창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킹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리시리즈 A단계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발·육성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 처방 지원
-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거점 구축
 - 투자자가 육성·투자까지 전과정 참여, 투자기관과 사업모델 검증
 - 데모데이, 전문가·VC 네트워킹 행사 등 정기적 투자 유치기회 제공
- 캠퍼스타운간 네트워킹 및 국내·외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
-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 9. 2.)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위탁)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정책팀 박은숙(☎ 2133-4821)

이미현(☎ 2133-4836)